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87
----------	-------

발의연월일 : 2025. 7. 10.

발 의 자 : 전진숙 · 안도결 · 양부남
김한규 · 이춘석 · 김종민
김남희 · 문금주 · 이인영
이수진 · 허종식 · 이정문
김정호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특히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도서·벽지 거주 청소년, 위기임신 청소년, 성폭력·성매매·성착취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등은 건강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청소년 간 건강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큼. 또한 상황에 따라 낙인과 비용 부담, 보호자 동행의 어려움 등으로 필요한 진료와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이 보건의료·상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 건강권 보장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현행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중심에서 “건강권 보장과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건강정책의 기본 방향을 권리 보장 관점으로 전환함.(안 제5조 개정)

나.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및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도서·벽지 청소년, 임신·출산 청소년, 성폭력·성매매·성착취 피해 청소년 등 건강위험에 노출되기 쉽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청소년이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단체,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설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방식 확대

현행 제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별도 조문인 제8조의4로 이관·확대하여 월경 건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안 제8조의4 신설).

마.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사. 자립지원 범위 보완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내용에 “주거지원, 자립지원”을 명시하여 보호 이후 청소년의 생활 기반 마련과 사회적 자립을 강화함(안 제14조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을 “건강권 보장과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을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등”으로 한다.

제3장에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청소년 건강지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체활동·영양·수면·성장·발달 등 생활건강에 관한 상담·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2. 월경 건강, 생식 건강 및 성(性) 건강, 위기 임신(본인이 원하지 아니하였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하게 된 임신을 말한다), 성매개 감염병 등과 관련한 상담·교육·정보제공 및 검진·진료·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연계
3.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건강한 관계 형

성 등 디지털 건강에 관한 교육 및 지원

4.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과 그 진단·치료 등에 필요한 보건의료·상담·복지 서비스 제공·연계 및 긴급 보호·지원
5. 생리용품, 위생용품, 일반의약품 등 청소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물품 지원
6. 건강 관련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청소년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가정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별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도서·벽지 청소년, 임신·출산 청소년, 성폭력·성매매·성착취 피해 청소년 등 등 건강위험에 노출되기 쉽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청소년(이하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

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의4(여성청소년의 월경 건강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월경 건강을 위하여 생리용품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이용 편의성, 생리용품에 대한 개별 선호도, 긴급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의 지급, 생리용품의 청소년 관련 시설 비치 등의 방법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2에 따른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및 그 밖에 청소년 건강지원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과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청소년활동지원”을 “주거지원, 자립지원, 청소년활동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u>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u>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 ----- ----- <u>건강권 보장과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u> 을 위한-----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u>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u> 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u>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등</u> ----- -----.
<신 설>	제8조의2(청소년 건강지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

소년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 영양 · 수면 · 성장 · 발달 등 생활건강에 관한 상담 ·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2. 월경 건강, 생식 건강 및 성(性) 건강, 위기 임신(본인이 원하지 아니하였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하게 된 임신을 말한다), 성매개 감염병 등과 관련한 상담 · 교육 · 정보제공 및 검진 · 진료 · 치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연계

3.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건강한 관계 형성 등 디지털 건강에 관한 교육 및 지원

4.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과 그 진단 · 치료 등에 필요한 보건의료 · 상담 · 복지 서비스 제공 · 연계 및 긴급 보호 · 지원

5. 생리용품, 위생용품, 일반의약품 등 청소년의 건강관리
에 필요한 물품 지원

6. 건강 관련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청소년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을 말한다), 가정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별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도서·벽지 청소년, 임신·출산 청소년, 성폭력·성매매·성착취 피해 청소년 등 등 건강위험에

노출되기 쉽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청소년(이하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신 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신 설>

<신 설>

한다.

제8조의4(여성청소년의 월경 건강

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청소년의 월경 건강을 위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

원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이용 편의성, 생리용품에 대한
개별 선호도, 긴급이용 수요 등
을 고려하여 생리용품 또는 생
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
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
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
한다]의 지급, 생리용품의 청소
년 관련 시설 비치 등의 방법
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생리

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및 방
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청소년 건강지원 전담

기관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2에 따
른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및 그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생략)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u>청소년활동지원</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생략)	<u>밖에 청소년 건강지원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과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주거지원, 자립지원, 청소년활동지원</u>----- ----- ----- ----- ----- -----. ③ (현행과 같음)
--	---